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1990
----------	------

제출일자 : 2021. 10.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보고이유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하였음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다.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식약처)」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종 사 자	등록 급식소	운영비	비 고
달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영송로 47 (태전동) 대구과학대학교내	158㎡ (사무실)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9명	199개소	630,000 천원 / 연	<現 위탁기간> 2019.1.1. ~ 2021.12.31.

○ 위탁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배포,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식소에 대한 지원 사업

○ 재계약 필요성

- 2013년부터 다년간 운영하여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철저한 급식 관리로 등록 시설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통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4. 재계약 경위 및 향후 일정

- 2021.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사결과 : 96.5점으로 재계약 의결(70점 이상시 적격)
- 2021. 10. : 협약체결 및 공보게재
- 2022. 1. : 위·수탁 개시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1 지침서」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탁기관 개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기존 수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직원채용 공고 실시여부, 근무기관 연계 등은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